E - 8 - 2012

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 : 충북대학교 김두현 교수

o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o 제·개정 경과

- 2009년 7월 KOSHA CODE 전기분야제정위원회 심의

- 2012년 4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KOSHA GUIDE E-94-2011(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)
 - HSG180 Electro-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
 - IEC 61496-2 Safety of machinery Electro-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 Part 2: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quipment using active opto-electronic protective devices
 - BS EN 61496-1 Safety of machinery. Electro-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.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s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
- o 기술지침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가이드는 기계의 위험부분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 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가이드는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전기감응 방호장치(Electro-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)"라 함은 어떠한 대상이 있음을 감지하거나, 방호차단을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품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.
 - 감지 소자
 - 제어·감시 장치
 - 출력신호 개폐장치
 - (나) "출력신호 개폐장치(Output signal switching device)"라 함은 기계 제어 시스템에 연결된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부속품으로 감지장치가 정상 운전시에 작동될 경우 오프(OFF) 상태가 됨으로써 반응하는 장치이다.
 - (다) "검출성능(Detection capability)"이라 함은 제작자가 규정한 전기감응 방호장치를 작동시키는 감지기능 변수의 범위를 말한다.
 - (라) "자격자(Competent person)"라 함은 전기감응 방호장치가 사용된 기계 에 대하여 최초 또는 정기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.
 - (마) "전동식 제동시스템(Electrodynamic braking system)"이라 함은 전자기

력을 사용해 직접 운동 중인 부품을 일시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.

- (바) "검출영역(Detection zone)"이라 함은 규정된 시험편이 전기감응 방호 장치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.
- (사) "능동 광전자 방호장치(Active opto-electronic protective device)"라 함은 장비에서 발생시킨 광 방사선이 검출영역 내의 불투명체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검출하는 투광부 및 수신부로 이루어진 감지기능 장치를 말한다.
- (아) "광빔 장치(Light beam device)"라 함은 제작자가 검출영역을 정하지 않은 하나의 투광부 및 수광부로 구성된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를 말한다.
- (자) "광 커텐(Light curtain)"이라 함은 제작자가 검출영역을 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투광부 및 수광부로 구성된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를 말하다.
- (차) "뮤팅(Muting)"이라 함은 안전관련 장치에 의하여 안전기능이 일시적으로 자동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.
- (카) "기계의 1차 제어요소(Machine primary control element)"라 함은 기계 가 작동을 시작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처럼 기계의 정상작동을 직접 제어하는 전기적 구성요소를 말하며, 이 구성요소에는 주 접촉자·자기 클러치·전동 유압밸브 등이 있다.
- (타) "기계의 2차 제어요소(Machine secondary control element)"라 함은 기계의 1차 제어요소와는 별도로 관련 위험부분의 주 원동기에서 전원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적 구성요소를 말한다. 장착 시 기계의 2차 제어요소는 보통 2차 개폐장치의 제어를 받는다.
- (파) "잠금상태(Lock-out condition)"라 함은 결함에 의해 전기감응 방호장 치의 정상작동이 방해받는 상태로서, 출력신호 개폐장치·최종 개폐장 치·2차 개폐장치를 모두 오프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(하) "제어·감시장치(Control/monitoring device)"라 함은 감지소자로부터 정보를 수신받아 이를 처리하여 출력신호 개폐장치에 신호를 보내고, 이의 기능을 감시하는 전기감응 방호장치에 장착된 부품을 말한다.
- (거) "전체 보호시스템(Overall safeguarding system)"이라 함은 광 커텐이나 광빔 장치가 차단된 경우에 기계의 위험부분이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전기감응 방호장치, 최종 개폐장치, 기계의 1차 제어요소와 2차 제어요소, 기계 클러치, 제동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.
- (너) "정지성능 감시장치(Stopping performance monitor)"라 함은 설비의 완 전정지 성능이 사전 설정된 한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감시장치를 말

한다.

- (더) "설비의 완전정지 성능(Overall system stopping performance)"이라 함은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응답시간과 기계의 정지시간을 합한 전체 시간을 말한다.
- (러) "응답시간(Response time)"이라 함은 감지소자의 작동을 이끈 사건의 발생시간과 출력신호 개폐장치가 오프상태가 되는 시간 사이의 최대시 간을 말한다.
- (머) "2차 개폐장치(Secondary switching device)"라 함은 잠금상태에서 오 프상태가 되도록 하는 장치로서, 기계의 2차 제어요소의 전원을 차단하 는 등 백업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(버) "이격거리(Separation distance)"라 함은 시험재료를 탐지할 수 있는 최외곽 위치와 최근접 위험위치 간의 거리를 접근방향으로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.
- (서) "최종 개폐장치(Final switching device)"라 함은 출력신호 개폐장치가 오프 상태로 될 때 기계의 1차 제어요소와 연결된 회로를 차단하는 안 전장치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 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의 형태

- (1) 기계의 방호수준을 확보하려면 1개 이상의 광빔 장치로 구성된 광 커텐이 나 광빔 장치로 구성된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가 필요하다.
- (2) 주요 형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.
- (가) 수직 접근형 : 검출 영역이 접근 방향과 수직인 경우로서 수직이나 수평 광 커텐 또는 광빔 장치 배열로 이루어진다.
- (나) 평행 접근형 : 검출 영역이 접근 방향과 평행인 경우이다.
- (다) 경사 접근형 : 검출 영역이 접근 방향과 어느 정도의 각도를 이루는 경우이다.

E - 8 - 2012

- (라) 혼합형 : 검출 영역에 상기 형태 중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된 경우이다.
- (마) 고정·회전 이중형: 검출 영역이 접근 방향과 수직 또는 평행의 어느 위치로든 변환할 수 있는 경우이다.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 어셈블리를 회전시켜 변환하는 경우,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위험부품 방향으로 어셈블리를 회전시킬 수 없어야 한다.
- (3) 전기감응 방호장치를 트립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를 통해 안전한 조건에 들여오기 전에 사람이 위험부분에 닿지 않아야 한다.
- (4) 위험구역에서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의 위치 조작은 이격거리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 정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거나 조정하여도 상해 위험에 노출되 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5) 일반 접근형 광 커텐

일반 접근형 광 커텐은 <그림 1>과 같다.

- (가) 기계의 특성이 변동되는 경우, 최대 이격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 결정한다.
- (나) 위험 구역에서의 이격거리는 다음 식 (1)로 계산한다.

S = (K × T) + C······(1) 여기에서,

S(mm): 이격거리

K(mm/s) : 인체 또는 인체 각부의 접근 속도

T(s): 시스템 정지성능(초)

C(mm): 광전자 방호장치 작동 전 위험구역 출입에 대한 추가 안전거리 (다) 최대 검출 성능이 직경 40 mm인 광 커텐의 경우, 검출영역에서 위험구역까지의 이격거리(S)는 4.(5)호(나)항의 식으로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

다. 이 공식의 각 값은 다음과 같다.

- ① K = 2000 mm/s
- ② C = 8 × (d 14) (단, 0 이상)

여기에서, d(mm) : 광 커텐 검출 성능 및 100 mm의 최소 허용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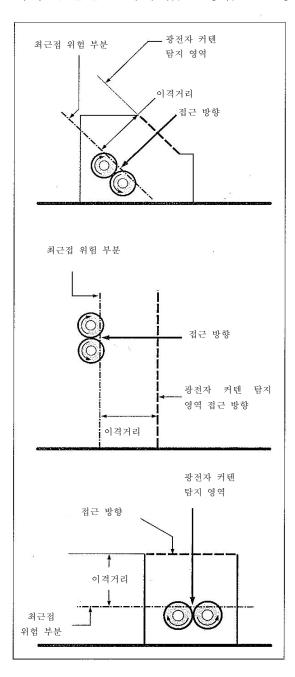
(라) K값을 2000 mm/s로 사용했을 때 S가 500 mm 이상일 경우에는, K를 1600 mm/s로 사용할 수 있다. 단, 계산 결과상 500 mm 이하의 값이 나

E - 8 - 2012

올 경우에는 사용 이격거리가 500 mm이어야 한다. 이에 관한 식은 (2) 와 같다.

 $S = (1600 \text{ mm/s} \times T) + 8 \times (d - 14 \text{ mm}) \cdots (2)$

(마) 광 커텐이 보호하지 않는 방향에서 위험구역으로 출입하는 경우, 고정·연 동 가드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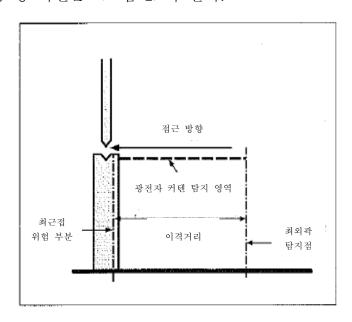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> 일반 접근형 커덴

E - 8 - 2012

(6) 평행 접근형 광 커텐

평행 접근형 광 커텐은 <그림 2>와 같다.



<그림 2> 평행 접근형 광 커텐

- (가) 이격거리는 4항(5)호의(나)항에서 공식으로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공식의 각 값은 다음과 같다.
 - \bigcirc K = 1600 mm/s
 - ② C = (1200 mm 0.4H), 단, 850 mm 이상
 - ③ H(mm) = 기준면(예: 바닥) 위 검출영역의 높이
- (나) 보통 광 커텐의 높이는 위험구역의 최저 위치보다 낮아야 하고, 평행 접 근식 광 커텐의 경우, H는 1000 mm를 초과할 수 없다.
- (다) 검출영역의 기준 높이의 경우, 해당 검출 성능 'd'를 다음 식 (3)으로 구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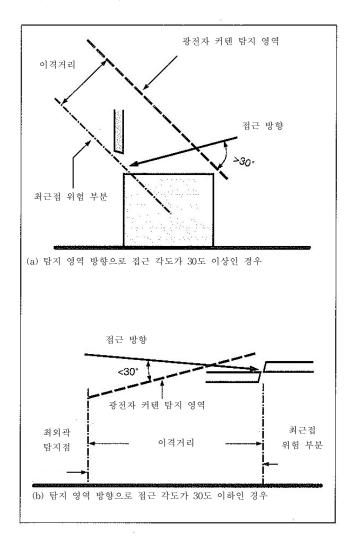
 $d = H/15 + 50 \text{ mm} \cdot \cdot \cdot \cdot \cdot (3)$

(라) 특정 기계에서의 작업 방식에 따라 광 커텐이 위험구역 한계치 이상에 위치할 것인지 이하에 위치할 것인지가 결정된다.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광 커텐 위, 아래, 주변에서 위험구역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
E - 8 - 2012

(7) 경사 접근형 광 커텐

경사 접근형 광 커텐은 <그림 3>과 같다.



<그림 3> 경사 접근형 광 커텐

- (가) 광 커텐을 통한 위험 부분으로의 접근은 탐지 영역의 수직 또는 수평 방향이 되지 않도록 광 커텐의 위치를 정한다.
- (나) 검출영역이 접근 방향으로 5도 이상의 각도에 배치된 경우, 예상 접근각 도가 30도 이상인 광 커텐은 직각 접근형으로 간주하고, 예상 접근각도가 30도 이하인 광 커텐은 평행 접근형으로 간주하여 이격거리를 계산하여야 한다.
- (다) 경사 접근형 광 커텐을 평행 접근형으로 간주할 경우, 이격거리를 유도하

E - 8 - 2012

는 공식은 위험구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검출영역으로 적용하여야 한다.

(8) 고정 또는 회전 암 이중 광 커텐

검출 영역이 접근 방향과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변환할 수 있을 경우, 양 방향에 대한 이격거리가 적용된다.

5. 기계식 제어시스템과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인터페이스

5.1 제동장치

(1) 일반사항

- (가)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가 트립장치로 사용되는 경우 기존 기계의 제동력 과 트립장치에 의한 추가적인 제동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(나) 제동장치는 부속품 하나의 고장으로 인해 고장위험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하다.
- (다) 전동식 제동장치는 전원차단을 통해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해야 한다.
- (라) 클러치 및 브레이크 조합시스템의 사용을 권장한다.

(2) 기계식 제동시스템

능동 광전자 방호장치 트립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기계식 제동시스템의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.

- (가) 제동능력은 최대부하 조건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.
- (나) 열을 방출시켜 과도한 온도상승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다) 부속품의 고장이 다른 부속품에 압력을 가해 중대한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야 한다.
- (라) 외함과 가이드는 바인딩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.
- (마) 브레이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(바) 오염물이 제동표면까지 침투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(사) 브레이크의 마찰 라이닝은 마모도에 따라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.

- (아)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마찰면에서 발생한 먼지나 파편의 누적을 최소화하고, 고장 난 부속품 때문에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(자) 전원공급 중단 또는 공압, 유압이 유실되면 즉시 브레이크가 걸려야 하고. 필요시 클러치가 해제되어야 한다.
- (차) 브레이크를 걸 때 사용하는 스프링에는 등급이 매겨져 있어야 하며, 브레이크가 작동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.
- (카) 브레이크를 클러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, 상호 정확하게 연결되도록 견고하고 짧게 설치해야 한다.

(3) 전동식 제동시스템

- (가) 전동식 제동시스템의 제동방식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직류전동 제동방식
 - ② 커패시터에 의한 제동방식
 - ③ 직류전동과 커패시터 제동방식을 혼합한 방식
 - ④ 극성변환에 의한 제동방식
- (나) 전동식 제동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전동식 제동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.
 - ① 전동식 제동은 직류 전류원을 감시하고, 전류공급이 중단되면 기계를 정지해 더 이상의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 - ② 기동시 커패시터를 감시하여 고장이 고장 검출되면 운전을 정지시켜야 하다.
 - ③ 전원공급이 중단되면 기계가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, 기계 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지시켜야 한다.
 - ④ 제동시스템의 조정은 잠금이 가능한 외함구조로 하고, 자격자만 조정하도록 한다.
- (다) 기계식 브레이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식 브레이크와 전동식 제 동시스템의 사용을 일부 장치에서 사용하고 있다. 이러한 경우, 혼합 제 동 장치의 성능 저하 또는 장애를 탐지하기 위한 정지 성능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(라) 기계의 제동시스템과 전동식 제동시스템이 호환되는지를 위하여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① 트랜스미션 시스템과 구동장비의 제동토크 영향

E - 8 - 2012

- ② 기계의 속도나 관성 변화 시 제동에 대한 영향
- ③ 모터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발열 영향
- ④ 정상작동에 관한 제동장치 능력과 미세조정 절차

5.2 클러치

(1) 일반사항

- (가) 기계가 전기감응 방호장치로 보호되는 경우, 부적합한 설계의 클러치를 사용해 기계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.
- (나) 최고의 제동효과를 위해서는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동시 작동하는 클러치-브레이크 혼합장치를 사용한다.

(2) 설계조건

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.

- (가) 용량은 최대지속 사용조건에서 작동에 악영향이 없어야 한다.
- (나) 열을 방출시켜 과도한 온도상승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다) 부속품의 고장이 다른 부속품에 압력을 가해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.
- (라) 클러치의 부식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.
- (마) 최악의 운전조건에서도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마찰 드래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동유격이 충분하여야 한다.
- (바) 마찰 라이닝은 사용 중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.
- (사) 클러치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찰면의 먼지나 파편의 누적 발생을 최 소화 하여야 한다.
- (아) 공압, 유압 또는 전원공급의 중단이 전기감응 방호장치 시스템의 안전무 결성에 악영향을 줄 경우, 즉시 클러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
- (자) 클러치를 해제할 때 사용되는 스프링은 압축유형이어야 하고, 과도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.
- (차) 스프링 세트는 규격, 품질 및 등급이 동일해야 하고, 스프링 하나가 고장 나도 클러치 작동을 해제할 때 클러치 해제능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.

E - 8 - 2012

(카) 브레이크를 클러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, 상호 정확하게 연결되도록 견고하고 짧게 설치해야 한다.

5.3 전기 및 전자시스템

- (1) 전체 보호시스템의 일부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위험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.
- (2) 출력신호 개폐장치, 최종 개폐장치, 2차 개폐장치 등의 용량은 기계의 1차 및 2차 제어요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.
- (3) 기계의 1차 제어요소로 접점을 사용하는 경우 접점의 개폐상태가 감시되어 야 하며, 이를 위하여 보조점점을 사용할 수 있다.

5.4 유압 및 공압시스템

- (1) 기계의 운전 중에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유압 및 공압 제어밸브가 즉시 작동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.
- (2) 솔레노이드에 대한 전원상실 또는 유압 및 공압의 상실로 인해 위험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.
- (3) 기계를 정지시키기 위한 제어밸브가 작동을 하지 못하면 다른 밸브가 작동되도록 제어밸브 2개를 설치하여야 하며, 밸브 중 하나가 고장 나면 기계가 운전되어서는 안 된다.
- (4) 밸브의 고장을 탐지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.

5.5 중력낙하에 대한 보호

(1) 중력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카운터밸런스 밸브(Counterbalance valve) 와 파일럿 체크밸브를 사용하는 경우 체크밸브는 실린더에 직접 장착하여야 한다.

E - 8 - 2012

(2) 중력낙하로 인해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기계가 재가동 될 때까지 실린더 내부의 공압이 유지되도록 제어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.

5.6 유압회로의 보호

- (1) 제어밸브 또는 구동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과도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압회로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(2) 밸브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가 실시되어야 한다.

5.7 제동장치의 공압제어

- (1) 공압으로 제동장치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가)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의 작동실린더에 압력이 누적되지 않도록 밸브의 밀 봉장치(Seal)나 시트(Seating) 내의 공기가 대기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.
- (나) 브레이크 작동 실린더와 밸브 사이에 설치된 배기구 및 배관은 공기가 즉시 방출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.
- (다) 브레이크 작동용 압축공기를 운반하는 배관은 외부의 기계적 충격으로부 터 보호되어야 한다.
- (2) 공압기계에 기계의 1차 제어요소가 2개 장착되어 있을 때, 이중 본체의 솔레노이드 작동 및 감시밸브나 이에 상당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클러치의 공압을 직접 제어하여야 한다.

6. 전기감응 방호장치 설치시 준비사항

(1) 일반사항

- (가) 전기감응 방호장치와 이를 활용한 기계의 설계, 제조, 사용과 관련된 관계자는 관련설비가 사용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자는 보호시스템의 작동방식, 기계가 올바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의

E - 8 - 2012

조치사항, 오작동을 인지할 수 있는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.

- (다)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로 보호되지 않은 위험구역에는 작업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라) 광 커튼과 위험구역 사이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, 들어가 있는 경우 이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.
- (마) 전기감응 방호장치가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벽의 설치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(바) 작업자는 오작동을 인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받아야 한다.

(2) 성능표준

- (가) 작업자가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동안 기계가 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전기감응 방호장치를 트립장치로 사용하는 경우,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작 동은 기계의 위험한 작동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.
- (다) 기계운전 중에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가 작동되면, 전기감응 방호장치가 정상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고 제어장치를 수동으로 재 작동시키기 전까지 는 기계를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(3) 기계 제어시스템

- (가) 최종 개폐장치 또는 출력신호 개폐장치가 기계의 1차 제어요소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- (나) 최종 개폐장치와 출력신호 개폐장치 중 하나라도 개방회로가 될 경우, 해당 기계의 1차 제어요소는 제어시스템의 다른 신호와 관계없이 즉시 오프(OFF) 또는 안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.
- (다) 기계의 제어요소가 2개 장착되어 있는 경우, 각 구성요소는 다른 구성요 소의 고장유무와 관계없이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.
- (라) 이중으로 설치한 기계의 1차 제어요소로는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기계에 서는 각각의 출력신호 개폐장치가 기계의 1차 제어요소를 오프 상태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7.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검사 및 시험

(1) 일반사항

- (가) 사업주는 설비의 안전을 위하여, 반드시 다음 시기에 설비를 검사하여야 한다.
 - ① 설치 후, 최초 가동 전
 - ② 신규 장소에서 조립한 후
- (나) 사업주는 성능저하와 위험감소를 위하여, 다음 시기에 설비를 검사하여야 한다.
 - ① 적정 주기
 - ② 설비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때

(2) 최초 검사 및 시험

- (가) 최초 검사 및 시험은 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하며, 자격자는 기계와 전기감응 방호장치 공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- (나) 최초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여, 사본은 사용자가 보관한다. 수리나 개조 후 실시한 검사 및 시험결과가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안전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이를 기록하여 사본을 보관한다.
- (다)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성능표준이 충 족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① 작업자가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기계가 운전되지 않아야 한다.
 - ② 운전 중 위험이 있을 때에는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가 기계를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.
 - ③ 방호장비가 정상상태로 회복되고 기계 제어장치가 재 운전될 때까지 기계가 운전되지 않아야 한다.
- (라)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①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가 위험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에 있는지 확인한다.
 - ②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로 방호되지 않는 방향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추가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한다.
 - ③ 전체 응답시간을 확인한다.
 - ④ 작업자가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와 위험구역 사이에 있는 것이 불가능한지 확인한다.
 - ⑤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 검출성능을 확인한다.

- ⑥ 기계 및 전기감응 방호장치는 설계자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기계 제어장치와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연결을 확인한다.
- ⑦ 정지성능 모니터(장착 시)를 검사하여 배치와 설치가 올바른지 검사 하다.
- ⑧ 뮤팅 장치(장착 시)를 시험한다.
- ⑨ 브레이크나 클러치(장착 시)를 검사한다.

(3) 정기검사 및 시험

- (가) 자격자만이 정기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. 정기검사 및 시험의 권장 최장 간격은 6개월 또는 12개월이지만, 이는 장착장비와 전체적인 위험도 에 따라 결정한다.
- (나)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- (다) 정기검사 및 시험은 7.(2)항의 (라)와 같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 검하여야 한다.
 - ① 기계의 1차 제어요소를 검사 및 시험하여 정상작동 여부, 정비나 교체의 필요성 등을 확인한다.
 - ② 기계 제어장치와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연결장치를 검사하여, 시스템 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유무를 확인한다.

(4) 기능 안전점검

- (가) 기능 안전점검은 표준업무로서 위험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(나) 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①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가 감지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위험부분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와 측면, 후면 가드상태가 올바른지를 확인한다.
 - ② 위험구역에서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까지의 이격거리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.
 - ③ 사람이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와 위험구역 사이에 있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다.
- (다) 전기감응 방호장치가 뮤팅되어 기계운전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확인한다.
 - ① 정지성능 모니터(장착 시)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.
 - ② 캐비닛 하우스를 점검하여 전기·전자장비가 폐쇄 및 잠금 상태인지, 자격자가 키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.
 - ③ 장비나 전기배선 손상의 외관을 점검한다.